

## 중소건설사 죽이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김정석  
건설경제신문 정경부 차장

‘상생’이나 ‘공생’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 분야에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자유경쟁에만 맡겨놓으면 아무리 우량한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 제도는 특정 업종이나 업역에 대한 특혜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현재 중소건설현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책이 중소건설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가운데 품목을 선정해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1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중소건설사인 설비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자재가 늘어날수록 중소건설사는 공사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매출 감소나 정부 예산 증가는 ‘파이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감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품질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희생’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중소건설업계는 먼저 자재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공사 지연이 빈번하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품목에서는 공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업체의 주장도 이 제도의 폐지에 있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자재 공급을 적기에 하고 공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자재는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공사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 중소기업사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나라 제품 납품에 맞춰 공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재가 일찍 와도 문제다. 공사 자재는 부피가 큰 품목이 많다. 그런데 자재를 현장에 미리 놓고 가면 보관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사로서는 따로 보관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게 된다.

특히, 기계설비건설에서는 주변 시스템과의 선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제때에 공급이 안되면 적기 시공은 물론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설계가 달라지면 이미 납품된 자재를 반납하고 다시 들여와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그만큼 공사가 지연된다.

공사지연, 추가비용 발생, 품질 하락 이외에도 중소기업업체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사로서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한두 가지만 발생해도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을 모두 날리고 적자로 공사를 마치고 쉽다.

최근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두고도 중소기업업체와 중소기업업체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물

품과 공사를 물품으로 묶어 함께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 물품과 공사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 취지였다. 그런데 중소기업업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파이 싸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업체의 주장은 물품까지 공사에서 말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물품은 물품대로 발주하자는 것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업체의 주장도 이 제도의 폐지에 있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자재 공급을 적기에 하고 공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자재는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공사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 중소기업사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현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업체를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상생의 강’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업체에서 중소기업체로 흐르고 있다. 